



출장업무를 수행 중이더라도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와 상관관계가 없다

대법원 2002두5290

[요지]

망인이 출장업무를 수행 및 그 이동과정에서 상당히 과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유]

1 원고의 남편 망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기공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고리1사업소 소속 근로자로 고리1사업소 전기2팀 소속의 이○○, 정○○, 공○○(팀장)과 함께 2000. 8. 23일부터 2000. 8. 25일까지 2박 3일간 출장명령을 받게 되었다.

2 이에 망인은 정○○, 공○○과 함께 공○○의 자택에 모여서 공○○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기

로 약속하고, 2000. 8. 23. 06:00경 공○○의 자택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공○○의 승용차에 공○○, 정○○과 함께 동승하여 07:00경 위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3:00경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3 망인은 2000. 8. 24. 17:00까지 발표회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에 2000. 8. 25. 07:20경 공○○의 자택에 도착한 후 위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대밭집 맞은편 도로상을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상을 마주 보고 진행하여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사고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 후 망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97%로 측정되었다.

4 한편,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소외 회사에서 교통수단의 선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시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여러 명이 함께 출장을 갈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용차 1대에 2명 이상이 동승하여 출장을 갔었다고 하였다.

5 원고는 2000. 10. 23.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

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0. 12. 8. '망인이 특정장소에 집합하는 과정 및 그 장소에서 해산하여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교통수단 및 경로선택권이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제2문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출장 중에 발생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출장 명령을 받고 각자 일정한 지점에 집합하여 사업주측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경우 집합 장소에 집합한 후 업무수행 장소로 갔다가 다시 집합장소로 돌아올 때까지를 출장중이라고 할 것이고, 각자가 주거지에서 집합장소로, 그리고 집합장소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아직 출장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출장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개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이 출장업무를 끝내고 팀장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다음 자택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퇴근 중의 사고로 볼 수 있을지언정 출장 중의 사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은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

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이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 망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출장업무를 수행 및 그 이동과정에서 상당히 과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과로한 상태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